

제 23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1.18.)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래 만]

목 차

1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3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 8.

2. 개정이유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24조제3항)
- 나. 근로자 전입정착금 신설(안 제24조의2)
- 다. 법령 개정사항, 조직개편사항 등 반영(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 라. 법령위임없이 주민제한 사항 등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1조, 제25조제3항, 제2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16. ~ 12. 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전입정착금 지원으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기업의 고용 안정화에 기하고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인구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보조금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와 주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다.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

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건번호	의 11-0155	견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1. 8. 8.
안건명	강원도 태백시 - 태백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태백시 자활기금 상환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				

• 질의요지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태백시 자활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의견

태백시 자활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자활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대상, 용자규모, 용자금의 상환방법 및 용자금의 감면조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용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용자대상의 자격 기준이나 용자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용자대상에 대한 연대보증 요건과 기금의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 상환의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독촉,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단계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강력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체납처분의 절차와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자활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에서 용자받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 어떠한 형식의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조례로 위임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자활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상환 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상환기한이 지난 미상환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하는 사업체 및 승강기산업체[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공장, 본사, 연구소 포함)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이노비즈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기업사랑운동의 범군민적 확산과 기업인이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사랑 환경조성

제4조(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5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기업홍보) 군수는 군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군수실 등 편의제공) 군수는 관내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군수실 및 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부료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산 평정가격은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제13조(대부료의 면제)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이란, 원자재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이 경우 군과 대부계약한 토지의 대부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이자 지원)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3.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이노비즈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장개척 지원)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산품전시관 운영)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유지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도록 한다.

1. 신규유치기업
2. 신제품 생산기업
3. 유망 중소기업
4. 그 밖의 관내 기업

제18조 <삭제 2011.4.4>

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부스(조립, 부스 2개)를 기준으로 하며, 부스임차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내로 한다.
2.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 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9조의2(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도 통하는 파워 브랜드 개발로 매출 극대화 및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제19조의3(창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군수는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고취와 개발된 기술의 자산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군 법률고문번호사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연결마을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조성 산업단지와 연결한 마을의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제22조(노동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문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자격 및 인원,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만, 고등학생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2.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3. 학교, 단체, 기업 또는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한다.

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장학생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영세하여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기업체
2. 근로자의 보수 및 재산정도

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및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 8.

2. 개정이유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

- 1) (현행) 2018년 12월 31일⇒(개정) 2021년 12월 31일
- 2)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3)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감면(안 7조)
-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법령 위임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4.~2019. 1. 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은 군세 감면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어 3년간 연장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읍”로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 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 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생략)

③ 삭제 <2018. 12. 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9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 12. 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0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

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현행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중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 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제14조 삭제<'18.3.28.>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서울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제18조 삭제<'18.3.28.>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 8.

2.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 7. 1. 시행)에 따라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였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험료 지원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안 제3조)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제3조 지원대상 규정으로 이동
- 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조)
 - 1) 현행 : 월 10,400원 미만
 - 2)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72백만원 확보, 33백만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4.~2019. 1. 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하는 것으로 개편.

나. 보험료 상한과 하한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018년 7월 1일 시행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3,100원으로 고시.

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193,1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096,5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7,4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10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8.3.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